의안번호	2208883
의 뢰 인	이만희 의원
회 답 일	2025. 3. 25.
추계번호	25F1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 소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0.8억 원, 2033년 20.8억 원 등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312억 원(연평균 44.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3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3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4조 제1항)	20.8	41.6	62.4	62.4	62.4	41.6	20.8	312	44.6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4조 제1항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4조 제1항(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3년까지 발생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조세지출예산서상 2025년 감면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신규 감면 발생액을 가정한 후, 향후 감면 발생액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계

○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감안하여 조세지출예산서상 2025년 전망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은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시기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5년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적용된 감면실적의 합계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입주 후 5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운영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0.12.29. 개정된 규정으로, 농공단지[1]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2]에 입주한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명 미만인 시·군·구에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감면기한 및 감면율, 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18.12.24. 일부개정: 5년간 법인세 등에 대한 50% 감면율,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감면 한도와 상시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신설
- 2021.12.28. 일부개정: 감면대상 사업장의 폐업 또는 법인 해산 등의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

○ (현행규정)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

- 감면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②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감면한도: ①+② 또는 ①+③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③ 청년상시근로자수 등×2,000만 원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

❑ (감면실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0년 43억 원에서 2024년 99.6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표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 2020~2025년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p	2025p'
법인세	30.4	38.9	49.2	45.9	98	102
소득세	12.6	10.6	4.9	4.0	1.6[1)]	2
합계	43	49.5	54.1	49.9	99.6	104

주: p는 잠정, p' 전망

1) 2024년 소득세 감면실적

자료: 국세통계포털,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각 신고연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나주·나주혁신·김제지평선·북평·담양·동함평·세풍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총 13개 지역을 말한다.

2) 추계방법

❑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5년 감면액 전망치를 바탕으로 신규 입주기업으로 인한 감면 발생액을 가정한 후,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은 2025년 감면액(104억 원)의 20% 수준인 20.8억 원으로 가정

- 2025년 감면실적 전망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입주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기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된 감면실적의 합계이므로 이 중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은 감면액의 1/5인 20.8억 원으로 가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

-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1~t+5년에 걸쳐 발생

[표 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액 추계: 2025~2033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1	2033
’26년 입주기업	20.8	20.8	20.8	20.8	20.8		
’27년 입주기업		20.8	20.8	20.8	20.8	20.8	
’28년 입주기업			20.8	20.8	20.8	20.8	20.8
감면 추계액	20.8	41.6	62.4	62.4	62.4	41.6	20.8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 소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0.8억 원, 2033년 20.8억 원 등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312억 원(연평균 44.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3년까지 발생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3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4조 제1항)	20.8	41.6	62.4	62.4	62.4	41.6	20.8	312	44.6

Ⅳ. 부대의견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